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64
----------	------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 선제적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빅데이터 활용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의 기본계획 수립
- 2) 빅데이터 책임관 및 빅데이터 위원회 설치 등
- 3)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관리·저장·활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요청 및 수집하여 전산시스템에 저장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의 비식별화

6)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다. 빅데이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설치

2) 빅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분야 전문가 구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4.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소속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비식별화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제8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관리·저장·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빅데이터 수집·관리·저장) ① 빅데이터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 책임관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 활용)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교육·관광·복지·경제·건강 및 의료·안전·주거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빅데이터 기반의 구정 정책개발 수요조사 사업
3. 관내 중소기업 등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컨

## 선택 사업

4.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에 관한 사업
5.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빅데이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2.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4.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5.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3조(평가)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및 운영성과 등

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개인·기업·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제8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관리·저장·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빅데이터의 활용)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2025까지 향후 5년으로 함.

○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등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활용함을 전제로 추계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0	0	0	0	200,000	
	빅데이터의 활용		1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소계		18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1,180,000
□ 총 비용			18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1,18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 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시 비								
구비	지방세수입		18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1,18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기 타								
합 계			18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1,180,000

##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2025년도 빅데이터 플랫폼의 고도화로 약 2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빅데이터의 활용(2020년 기준)
  - 민간빅데이터 구축 및 생활밀착형 분석 사업: 134,200천원
  -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 39,000천원
  - 스마트 로드뷰 구축사업: 34,480천원

## < 관 계 법 규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제5조(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6.>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5.16.>

③ 위원장은 구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8.5.16.>

④ 위원은 학계·기업계·민간단체·구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8.5.16.]